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0-28

인터넷상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The Study on the Regulatory System Improvement method for the Elimination of the Distribu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on the Internet

이종관/박창준/이지은/강지현/정동주/최현영

2020. 12

연구기관 : 법무법인(유) 세종



이 보고서는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터넷상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연구기관 : 법무법인(유) 세종

총괄책임자 : 이종관

참여연구원 : 박창준

이지은

강지현

정동주

최현영

목 차

요약문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2장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기존 논의 동향	5
제1절 디지털성범죄의 현황	5
1. 디지털성범죄물의 개념 및 특징	5
2. 디지털성범죄 유형	7
3. 디지털성범죄 피해 현황	10
제2절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	14
1.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법률	14
2.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책	27
제3장 디지털성범죄물 규제 관련 이슈별 검토	31
제1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관련 이슈	31
1.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사후적 유통방지 조치	31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적 기술적·관리적 조치	35
3. 기술적 조치 무력화 금지 및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기록 의무	41
제2절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이슈	42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과징금 부과 수준에 대한 검토	42
2.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46
3.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	47
제3절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관련 이슈	50

1.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51
2.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와 자격요건	57
3.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58
제4절 투명성 보고서 제출 관련 이슈	60

제4장 디지털성범죄물 규제 관련 이슈별 개선방안 63

제1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관련	63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	63
2. 관련 고시(안)	69
제2 절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73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	73
2. 관련 고시(안)	76
제3 절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관련	79
제4 절 투명성 보고서 제출 관련	82

참고문헌 84

표 목 차

<표 2-1> 가해행위별 유형	9
<표 2-2> 사이버 성폭력 유형	10
<표 2-3>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추이(2009년~2018년) (단위 : 건(%)) ·	11
<표 2-4> 연도별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 (단위 : 건)	12
<표 2-5>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중복) (단위 : 건(%))	13
<표 2-6>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	14
<표 2-7> 주요 성폭력 사건 및 논의된 법·제도적 대책	15
<표 2-8>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성폭력처벌법 조항	16
<표 2-9> 딥페이크 처벌 관련 성폭력처벌법 신설 조항	17
<표 2-10> 협박·강요 관련 성폭력처벌법 신설 조항	18
<표 2-11>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19
<표 2-12> 2016헌가15 헌법재판소 결정문	20
<표 2-13>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21
<표 2-14>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신설 조항	22
<표 2-15>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통신망법 조항	23
<표 2-16>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신설 조항	25
<표 2-17>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법 조항	26
<표 2-18>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전후 비교	28
<표 3-1> 제50조 금지행위 위반의 중대성 판단 기준	49
<표 3-2> N번방 사건 관련 주요 법률 개정 현황	55
<표 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안)_사전조치의무사업자 관련	63

<표 4-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3의2](안)_사전조치의무사업자 관련	65
<표 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66
<표 4-4>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안)_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69
<표 4-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7(안)_과징금 관련	73
<표 4-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3의3](안)_과징금 관련	74
<표 4-7>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안)_과징금 관련	76
<표 4-8>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2(안)_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관련	80
<표 4-9>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1의2](안)_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관련	81
<표 4-10>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안)_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83

요 약 문

1. 제 목

인터넷상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n번방 사건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개인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나 심각성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되는 디지털성범죄물의 경우 디지털 특성상 콘텐츠 확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半)영구적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을 치명적인 피해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2020.12.10. 시행)과 정보통신망법(2020.12.10. 시행)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방안, 유통 방지 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가장 먼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i)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

한 개념을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ii)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발생 및 이용자 피해 현황, 사업자 제재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안 마련을 위해 (iii) 국내 법제도 및 정책적 동향을 분석하여 한계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구체적인 조문 작성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항목은 아래 제시된 것과 같다.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 범위
-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 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 및 해당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 방안(기술적 조치 사항, 기술적 조치 확인 업무 수행 절차, 시스템 구축 방안, 상시 및 정기 현장점검 방안 등)
-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 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책임자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범위 및 책임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인원 수 등에 관한 사항
- 디지털성범죄물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 의무 부여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범위 및 투명성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4. 연구 내용 및 결과

과거 온라인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개념 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의 디지털성범죄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i) 일반 성범죄와 달리 물리적 접촉 없이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나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행위 등을 고려할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범죄를 배제할 수 없으며, (ii) 원본의 손

실이나 변형 없이 무한 저장·복제·변환이 가능하여 피해의 지속성이나 확장성이 매우 크며, (iii) 가해자 특징이 어려워 가해자가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거나 (iv) 실제 받은 피해 수준을 축소시켜 피해자가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은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n번방과 같은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대검찰청(2019.12)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고 건수는 전체 성폭력 범죄 중 지난 10년 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9.12)의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20.9.6.)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도 대검찰청 분석 통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왔다.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및 제64조의5가 2020년 12월 개정되었고,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한바 있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로 마련한 관련 법령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불법촬영물의 신고·삭제 요청 가능 기관·단체의 경우 각 지역별 피해 구제 기관·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기준은 전체 매출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되 불법촬영물 등이 쉽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i)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을 제공하는 SNS 서비스, (ii)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

되는 1인 방송 서비스, (iii)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 등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적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로 (i)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신고·삭제요청 창구, (ii) 이용자의 검색결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정보가 송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iii) 이용자가 게재하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터링하는 조치, (iv)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를 통해 개별 조치들의 구체적인 이행기준을 규정하고, 특히 필터링 조치와 관련하여 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 기준인 TTA의 성능평가 표준을 참고하여 성능평가 시행기관 및 기준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관련하여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기록 의무의 경우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기록 의무 기간인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을 참고하여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본문에서 언급하였다.

넷째, 디지털성범죄물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반행위의 중대성(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1천분의 15~1천분의27) 및 기준 금액(5억 원~9억 원)을 달리 하였으며,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역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과 관련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는 규범 간 통일성 및 수범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조치의무자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원 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해서는 관련 규범의 통일성을 위해 불

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를 부담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의 시행령, 고시 마련에 있어 직접적으로 참고 가능한 구체적인 조문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및 [별표 3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2 및 [별표 1의2], 동법 시행령 제69조의2 등을 마련하는데 활용되었다.

6.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근절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사회적 환기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근거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동시에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디지털성범죄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Regulatory System Improvement method for the Elimination of the Distribu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on the Interne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Recently, digital sex crimes have been constantly occurring in the Internet space, such as the Nth-room case, and the severity of the damage to society and individuals is becoming more serious. The victim is suffering from the fatal damage of Digital sex crimes and the damage is semi-perman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direction of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2020.12.10.) to eradicate the distribution of digital sex crimes. Specifically,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digital sex crimes in advance, detailed regulations for creating a sound Internet ecosystem is to be prepared through in-depth review of the scope of the applicable service providers, the distribution prevention measures, penalty criteria for the violation and obligations to submit transparency report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emerging concepts of new types of digital sex crimes and the occurrence of digital sex crimes by type, user damage, and business

sanctions. Next, in order to prepare more effective legislation, domestic legal system and policy trends will be analyzed to point out limitations and use them as evidence for writing specific articles. The items is to be proposed in this study as follows.

- The Scope of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t may request to delete illegal photographs;
- The Scop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dditional telecommunication businesses)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and take technical and management measures
- The Criteria for imposing penalties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 The Scop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who need to designate as a person in charge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 The scop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submit a transparency report

4. Research Results

As social problems of digital sex crimes continue to arise, the government has amended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the Youth Sexual Protection Act,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rticles 22-5 and 22-6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44-9 and 64-5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ere amended in December 2020 as the voice calling for the regulation system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grows due to the Nth-room case.

The specific detail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levant statutes adop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t can request to delete illegal photographs will be designated and announc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econd,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criteria for operators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and take technical and management measures is set based on total sal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and the average number of users per day, but limited to SNS services providing (i) SNS services providing online communities, chat rooms, etc., (ii) single-person broadcast services conducted by real-time streaming, (iii) portal services providing search functions, etc.

Third, as a precautionary measure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we stipulates the following obligations; (i) providing a way to regularly report and request to delete illegal photographs, (ii) providing a measures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illegal photographs as a result of a user's search, (iii) providing a measures to filter whether the information posted by the user corresponds to illegal photographs, (iv) providing a warning messages for distributing illegal photographs.

Fourth, the administrative fine is to be calculat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service provided by the operator, the amount of profits acquired due to the violation, duration and the number of violation.

Fifth,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stipulated that the operators obliged to designate a person in charge of preventing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is to be the same as the operators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inally, the obligation to submit transparency reports was defined in the same way as the scop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who are responsible for designating a person in charge of preventing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used to stipulate Article 30-5 [Appendix3-2] and Article 30-7 [Appendix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Article 35-2 and Article 69-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6. Expect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evidence for social ventilation to the related issues, establishing legal systems and policies to eradicate the digital sex crimes in Korea, minimize user damage, and create a sound Internet ecosystem. At the same time, it is expected that the realistic measures to eradicate the digital sex crimes will be arranged to minimize user damage and social confusion caused by digital sex crimes.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Current Trends in Discussion related to
Digital Sexual Crimes

Chapter 3. Review by Issue Related to Regula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Chapter 4. Improvement Measures for Each Issue
related to Regula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2019년 말 전 국민의 분노를 사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해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여 송수신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한 텔레그램에서 여러 개의 단체 채팅창을 개설하고 성착취물을 대량 유포하였다고 하여 n번방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2020년 3월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를 검거·구속하면서 해당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1월 국회에 발의된 제1호 국민동의청원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기술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더욱 문제시되고 있는 성범죄이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2020)¹⁾. 일종의 젠더 기반의 폭력으로,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음란,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등을 포함한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 혹은 사이버 성범죄와 구분되는 점은 불법적인 행위가 온라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제작 부분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즉,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적인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과 피해가 발생하는 공간을 모두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윤덕경·전혜상·천재영·강지명, 2019.12; 서울특별시·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

1) URL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543>

센터, 2017).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되는 디지털성범죄물의 경우 정보의 손실이나 변형 없이 무한한 저장, 복제,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확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재유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디지털 성범죄로 발생하는 피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半)영구적일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의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받을 치명적인 피해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1994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²⁾ 등 꾸준히 관련 법제도 및 관련 대책 등을 수립,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은 온라인 공간에서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 등장하는 만큼 이를 실효성 있게 단속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검찰청 2019년 범죄분석 결과(대검찰청, 2019.12)에 따르면 전자기기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2009년 834건에서 2018년 6,08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 발생한 32,104건의 성폭력범죄 중에서 강제추행(15,672건, 48.8%) 다음으로 큰 비중(19.0%)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기소율은 2010년 72.7%(666건 중 484건)에서 2018년 46.9%(5,245건 중 2,458건)에 불과하다. 2015년의 기소율이 31.3%(5,104건 중 1,596건)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은 기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아동·청소년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및 가해 양상이 점차 저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2)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폐지됨

있다. 이번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2020.6.2.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성폭력처벌법’)(2020.5.19.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0.12.10. 시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2020.12.10. 시행) 등이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각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하위고시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어 관련된 시행령과 고시를 마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이에 따라 본 연구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방안, 유통 방지 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발생 및 사업자 제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안 마련을 위해 국내 법제도 및 정책적 동

향을 분석하여 한계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구체적인 조문 작성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을 마련함으로써 법령 개정의 시차를 제거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장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존 논의 동향

제 1 절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유형

1.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특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까지도 정부와 연구자들이 꾸준히 디지털 성범죄 개념을 정의내리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스마트폰, SNS, 웹하드 등 촬영 및 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이자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동시에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가 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서울특별시 외, 2017).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과거 온라인 성폭력이나 온라인 성희롱, 사이버 성폭력 등의 개념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성폭력의 경우 2000년대 초 온라인 공간에서 텍스트,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성적인 언어나 정보, 음란한 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하는 등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불쾌감,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심영희, 2001; 이수연·이혜림·김수아·김하얀, 2014)에 한정되어 온라인 성희롱, 온라인 스토킹,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반면 사이버 성폭력 개념이 도입되면서는 온라인 성폭력보다는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된, 디지털 촬영 기기로 불법 촬영한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서승희, 2017)로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사이버 불링, 사이버 스토킹, 사진 성적 합성 등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 두 개념은 온라인 공간 내에서만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되었다(윤덕경 외, 2019.12).

관련 법령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디지털 성범죄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반포·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즉,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에 대한 동의 없는 유포 및 판매, 협박하는 행위규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해당 규정만을 따를 경우 디지털성범죄물을 단순히 저장하는 행위나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등은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은 개정(2020.5.19.)을 통해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규정을 신설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행위를 디지털 성범죄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첫째,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불법 합성물 등으로 현실 공간에서의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전제되기 때문에 현실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던 사이버 성범죄와 구분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성범죄물은 원본의 손실이나 변형 없이 무한 저장, 복제, 변환이 가능하므로 피해의 지속성이나 확장성이 매우 크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해자 특징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포 시 상대적으로 죄의식이 낮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섯째, 피해자에게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지 못했다는 비난 프레임을 씌우거나 실제 받은 피해 정도를 축소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되어 있다.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정의되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역시 정부의 정책 취지나 연구자의 연구 목적별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내용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크게 (i) 불법 촬영과 유통·공유, 촬영물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유포 협박과 (ii) 사진 합성과 성적 괴롭힘, 디지털 그루밍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서울시, 2019).

또한 서울특별시 외(2017)의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에서는 가해행위별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크게 (i) 촬영물 이용 성폭력과 (ii)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설명한다. 촬영물 이용 성폭력은 다시 (i-a) 촬영, (i-b) 유포·재유포, (i-c) 유포협박, (i-d) 유포·소비로 구분된다(아래 <표 2-1>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정책브리핑(2020)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동일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물의 범위를 (i)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물, (ii) 합성·편집물(딥페이트 등), (iii)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iv)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9.12)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청소년 상담 매뉴얼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불법 촬영과 비동의 유포, 유포협박, 합성물 제작,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언어 성폭력, 비동의 성적 이미지 전송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 불법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받지 않고 촬영하는 행위이며, (ii) 비동의 유포는 본인이 제작했거나 전달받은 불법 촬영물(본인 스스로 찍은 촬영물 포함)을 사이버 공간에 퍼뜨리는 범죄이다. (iii) 유포협박은 사이버 공간 내 불법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피해 당사자 등의 생명, 신체, 명예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며, (iv) 합성물 제작은 게시·유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범죄이다. (v) 온

라인 그루밍은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와 쌓은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피해자 신체 사진,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후 유포협박을 하며 알몸사진, 음란 영상 촬영,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범죄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vi) 온라인 언어 성폭력은 댓글, 채팅 등으로 성적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이며, (vii) 비동의 성적 이미지 전송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사진, 영상, 링크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실시한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2020)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 유형 분류 기준으로 유포, 불법 촬영,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진합성, 사이버 괴롭힘, 몸캠 및 해킹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i) 유포는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를, (ii) 불법촬영은 동의 없는 촬영을, (iii) 유포협박은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를, (iv) 유포불안은 유포 불안을 호소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v) 사진합성은 사진이 기타 성적 촬영물과 합성된 경우로, (vi) 사이버 괴롭힘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행한 경우로, (vii) 몸캠 및 해킹은 직접적인 요구나 해킹 등을 통해 받은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경우로 설명되고 있다. 그 외에도 스토킹이나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도 실제 조사에서는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에서는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을 매체 이용에 따른 행위별로 구분하기도 한다. 디지털 매체와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촬영, 편집 및 조작, 유포, 성적 괴롭힘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는 것이다(이선희, 2018). 연구자는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으로 (i)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여 성적 모멸감을 유발하거나 (ii)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영상 및 신호를 전시·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iii) 유포 범죄를 유인·방조·협력하는 통신 환경을 제공하거나 (iv) 실제 상업적 목적으로 성행위 영상 등 불법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행위 등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1> 가해행위별 유형

유형	성격	예시	
촬영물 이용 성폭력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형/직접 촬영형 •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도촬(몰래카메라 등) • (신체 일부)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 (행위)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유포/ 재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 •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촬영물(최초 유포자 본인) 포함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로더(헤비업로더 포함) • 단톡방, SNS, 포르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유포 • 보복성 유포 • 지인능욕, SNS 계정에 유포
	유포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협박 • 다시 본인과 사귀면 유포를 하지 않겠다고 회유 • 유포협박으로 금전 요구
	유통/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 목적으로 사이버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SNS, 문자, 전자우편, 커뮤니티, 게임 채팅, 모바일 앱 등의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사진과 함께 성적인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 	

출처 : 서울특별시 외 (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13쪽.

<표 2-2> 사이버 성폭력 유형

유형		내용	예시
디지털 매체 이용	촬영	비동의 성적 촬영	비동의 성적 이미지 촬영, 비동의 성관계 촬영 행위
	편집 및 조작	비동의 성적 이미지 편집	지인·불특정 성적 이미지 영상 편집 및 합성 등 조작 행위
통신 매체 이용	유포	피해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비동의 유포 및 영리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유포 방조 협력	SNS, 커뮤니티, 불법사이트, 특수부가 온라인사이트(웹하드/P2P 등), 영상유포 행위자, 해비업로더,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
	성적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성적 신호(음성, 문자) 및 영상 등으로 타인의 성적 모멸감을 야기할 수 있는 온라인 상 행위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이미지 무단 게시, 성적 내용이 담긴 이메일 전송, 성적 내용의 악플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음란물 링크 및 파일 전송
디지털 및 통신 매체 복합 이용	포르노 제작 및 유포	상업적 목적으로 실제 성행위 장면 영상 등 불법 콘텐츠의 제작 및 유포	성행위 장면인 것처럼 연출한 성인등급 영상물과는 다름

출처 : 이선희 (2018). 사이버 성폭력과 여성분노의 조직화, 젠더리뷰, 가을호, 42쪽.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신고 건수는 전체 성폭력 범죄 중 지난 10년 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현아 외, 2018).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09년 전체 성폭력 범죄(17,377건)의 4.8%(834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31,063건) 중 24.9%(7,730건)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전체 성폭력 범죄(32,104건)의 19.0%(6,085건)를 차지하

였으나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번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5.0%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아래 <표 2-3> 참조).

<표 2-3>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추이(2009년~2018년) (단위 : 건(%))

연도	강간	강제 추행	강간 등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사	특수 강도 강간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공중밀집장소 추행	계
2009	3,923 (22.6)	6,178 (35.6)	2,706 (15.6)	18 (0.1)	1,544 (8.9)	479 (2.8)	834 (4.8)	-	761 (4.4)	934 (5.4)	17,377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584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22,168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4.0)	1,332 (5.7)	23,365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097
2014	5,092 (16.7)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2017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32,824
2018	5,826 (18.1)	15,672 (48.8)	182 (0.6)	8 (0.0)	655 (2.0)	43 (0.1)	6,085 (19.0)	646 (2.0)	1,378 (4.3)	1,609 (5.0)	32,104

출처 : 대검찰청 (2019.12). 2019 범죄분석, 15쪽.

또한 경찰청의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 건수(1,482건)는 2015년(3,419건)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2015년 1,130건 → 1,437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2015년 644건 → 735건)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 증가하거나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불법 콘텐츠 중 2019년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2,690건)는 2015년(4,244건)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아래 <표 2-4> 참조).

<표 2-4> 연도별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 (단위 :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성 풍속 범죄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전시·제조)	7	22	29	13	12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3,419	2,412	1,986	2,463	1,48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처벌법)	7,615	5,170	6,465	5,925	5,764	
	통신 매체 이용 음란(성폭력처벌법)	1,130	1,109	1,249	1,365	1,437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성폭력처벌법)	535	470	414	639	66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청소년성보호법)	644	831	479	988	735	
불법 콘텐츠 범죄	사이버 성폭력*	일반 음란물	3,523	2,515	2,043	2,661	1,769
		아동 성착취물	721	1,262	603	1,172	756
		불법 촬영물 유포	-	-	-	-	165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5,043	14,908	13,348	15,926	16,633	
	사이버스토킹	134	56	59	60	25	

* 2017년까지는 일반 음란물과 아동 음란물로 파악

출처 : 경찰청. 각 연도별 경찰통계연보.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2019.12)에 따르면 2019년 전체 피해자는 총 1,936명으로 월 평균 17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된 지원 건수는 상담 지원(5,178건), 삭제 지원(90,338건), 수사·법률 지원연계(480건), 의료지원 연계(56건)를 포함하여 총 96,052건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은 유포(1,001건, 29.7%)와 불법 촬영(875건, 26.0%), 유포불안(414건, 12.3%)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2018년, 2019년 접수된 피해 유형은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2-5> 참조).

<표 2-5>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중복) (단위 : 건(%))

기간	유포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유포 불안	사진 합성	사이버 괴롭힘	몸캠·해킹	기타	합계
2018	758 (33.1)	656 (28.7)	208 (9.1)	216 (9.4)	69 (3.0)	108 (4.7)	31 (1.4)	243 (10.6)	2,289 (100)
2019	1,001 (29.7)	875 (26.0)	289 (8.6)	414 (12.3)	134 (4.0)	218 (6.5)	47 (1.3)	390 (11.6)	3,368 (100)

출처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12).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15쪽.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심의 대상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공개 정보나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 등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해당 소위원회가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총 34,346건으로 전년 동기(23,499건) 대비 10,847건(46.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최근 디지털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으며, 2020년 8월까지 총 3,590건에 대해 시정요구하였다(2017년 370건 → 2018년 2,380건 → 2019년

3,297건)(아래 <표 2-6> 참조). 다만 관련 통계 자료들은 이용자 신고나 심의 요청 시에만 확인이 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2-6>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

구분	심의	시정요구			
		계	이용해지	삭제	접속차단
2017년(~6.12)*	2,977	2,977	-	1	2,976
2018년	17,486	17,371	-	123	17,248
2019년	25,992	25,900	-	4	25,896
2020년(~8월)	24,694	24,668	1	20	26,647

* 2017년 6월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 종료 후 2018년 3월까지 제4기 위원회 위원 구성이 지연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0.9.6.). 보도자료.

제 2 절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법규제 동향

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국내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아동·청소년과 여성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해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관련 법들은 1997년 국내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유포되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빨간 마후라’ 사건 등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마련되었다(전윤정, 2020.9).

<표 2-7> 주요 성폭력 사건 및 논의된 법·제도적 대책

시기	사건	법·제도적 대책
1997.7	‘빨간 마후라’ 사건, 청소년성매매사건 등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와 카메라 촬영죄 도입
2000.1	영화 ‘거짓말’ 상영 문제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2004.12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공소시효 연장, 신뢰관계자 동석
2008.12	안산 8세 여아 성폭행(조두순)	음주감경 배제, 처벌법정형 상향, 공소시효 배제
2010.2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김길태)	신상정보공개, 성충동약물치료도입
2012.7	통영 초등학교 성폭행, 살인(김점덕)	음란물 단순소지 처벌
2015.9	위터파크 여성 동영상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	카메라촬영죄 법정형 상향 및 가중처벌, 신상공개 의무화
2016.5	공중화장실 등 여성몰래카메라 촬영 사건	공중화장실의 정의와 대상 확대
2017.5	소라넷, AV Snoop 음란사이트 운영자 구속 사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규정, 벌금형 강화
2018.2	불법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 몰래카메라 사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규정, 벌금형 강화불법촬영물 삭제지원
2019.3	체육계 운동지도자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신뢰관계 이용 범죄 처벌 강화
2019.11	다크웹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2020.2	딥페이크 촬영물 편집·제작·유포	딥페이크 촬영물, 지인능욕범죄 등 처벌
2020.3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	디지털성착취물 범죄 규제 강화

출처 : 전윤정 (2020.9).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61호, 3쪽.

가. 성폭력처벌법

우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의 불법 촬영물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동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표 2-8>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성폭력처벌법 조항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 외에도 2020년 3월 24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기존 촬영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 등이 발달함에 따라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처럼 편집·합성한 음란·불법 영상물인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영상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 된다.

<표 2-9> 딥페이크 처벌 관련 성폭력처벌법 신설 조항

<p>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한편, 2020년 5월 19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i)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대한 벌금 규모가 기존 500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ii) 카메라 등 촬영·복제 및 반포 등에 대한 징역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 규모가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iii)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조항과 상습 범죄시 가중 처벌을 적용되

는 조항이 신설(제14조제4항 및 제5항)되었으며, (iv)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시 처벌 규정(제14조의3도 새롭게 마련되었다(아래 <표 2-10> 참조). 뿐만 아니라 (v)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vi) 특수강도강간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15조의 2)도 신설되었다.

<표 2-10> 협박·강요 관련 성폭력처벌법 신설 조항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은 제11조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유통 행위,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대여·배포·제공,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알선 행위, 구입·소지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020년 6월 9일 법 개정 이전에는 동법 제17조3)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접수조치, 필

- 3)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

터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인식을 위한 조치, 발견 즉시 삭제 조치, 전송 방지·중단조치 등을 의무화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개정 이후 삭제되었다.

<표 2-11>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p>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와 관련해서는 2016년 8월 19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통신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 유통의 매개자에 불과하므로 불법촬영물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벌로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고,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발견하기 위한 명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통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과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

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주된 논거로 아동음란물의 실효적 차단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적극적 의무 부과가 필요하며, 아동음란물 폐해방지 공익이 더 크다는 점을 내세웠다.

<표 2-12> 2016헌가15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터넷 공간에서 음란물이 유포되는 현상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의 개별 단계마다 아동음란물의 보관·유통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단지 서비스이용자로부터 아동음란물의 삭제 또는 전송차단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만을 부과하는 방법 등은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윤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동음란물 보관·유통을 규제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이 위와 같이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보다 크며,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대처할 문제이다” (2016헌가15)

한편, 2020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i)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였고, (i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운반·광고 등과 관련된 행위의 법정형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상향하였다. (iii)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을 도모한 사람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조항(제7조의2)이 신설되었고, (iv)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소개 및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제11조제5항)가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v) 상습적인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제11조제7항)도 신설되었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은 웹하드 사업자와 같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불법 정보를 인식하거나 해당 정보의 검색·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 문구 발송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3>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p>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p>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p> <p>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3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또는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p>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를 부과하는 조항(제22조의5제2항)을 신설하였고,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 차단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제22조의6)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표 2-14>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신설 조항

<p>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 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p>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p> <p>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p> <p>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p>

-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라.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은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란물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주로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어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보다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음란물 유포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어 왔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상자의 동의 없는 불법정보의 유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외부적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표 2-15>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통신망법 조항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관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신설된 내용은 (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거짓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 개발·보급 의무 조항(제4조제2항제7호의2)과 (ii)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발생 행위에 대한 해당 법을 적용하는 근거 조항(제5조의2), (ii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조항(제44조의9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4), (iv)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과태료 조항(제64조의5 및 제76조제3항제25호)이다. 그 중에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관련 조항은 아래 <표 2-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16>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신설 조항

<p>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p>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p> <p>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형법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빌미로 유포 협박하는 행위(제30장)나 음란한 문서, 도화 등을 제조·소지,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제243조 및 제244조), 온라인 공간 내에서 성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명예훼손(제307조)하거나 모욕(제311조)하는 행위 등은 형법으로도 규율 가능하다.

<표 2-17>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법 조항

-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20.4.)

정부가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하 ‘근절대책’)은 신 유형의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정부 관계부처, 2020.4.23.).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i) 디지털성범죄물의 범위가 변형 카메라를 매개로 한 단순 촬영물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합성·편집물이나 강요 등으로 피해자가 직접 촬영·제공한 성착취물로 확대되었고, (ii) 해당 영상물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 SNS를 활용하여 성범죄의 발견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iii) 가해자는 조직화되어 대규모의 범죄 수익을 창출화하기 시작하였고, (iv) 피해자는 오히려 특정되어 그 피해 수준이 더욱 심화, 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절대책은 디지털성범죄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i)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ii)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iii)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iv)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또한 근절대책의 4대 추진전략으로 (i)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ii)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iii)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iv)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대를 설정하였고, 총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다.

한편, 근절대책은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친밀한 관계 등을 형성하는 방법을 통해 성적 영상물과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유포 협박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외에도 불법 영상물 등을 찾거나 소지하는 등의 수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영상물의 신속 삭제 지원 및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표 2-18>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대책 범위	• 변형카메라, 웹하드 등 범죄수단 별 타겟형 대책	•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
처벌기준 (법정형)	•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 제작행위 공소시효 폐지, 판매행위 형량 확대 등 법정형 대폭 강화
형집행 (수사 및 처벌)	• 법정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 구형·선고 • 텔레그램 등 폐쇄적 매체 활용으로 사전적발 곤란	• 검찰 구형기준, 법원 양형기준 마련으로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 가능 • 신고포상금제, 잠입수사 도입으로 범행 초기단계부터 적극 적발, 수사
아동·청소년 보호	• 아동청소년을 피의자 취급, 구제의 공백 발생 •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 보호 공백	• 아동청소년을 법률에 ‘피해자’로 명시하여 보호 대상임을 명확화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13세 미만→16세 미만), 보호 강화
처벌사각지대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새로운 범죄수법 출현으로 처벌공백 발생	• 디지털성범죄물 소지·구매행위 처벌,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로 사각지대 해소
범죄수익 환수	•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범인 해외 도피, 범죄수익 특정 곤란 시 수익 환수 곤란	•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 추정규정 신설, 추징보전 확대로 범죄수익은닉 원천 봉쇄·범죄 의욕 차단
피해자 보호	• 신속한 삭제 곤란 및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 유발	• 24시간 원스톱 지원, 先삭제-後심의 도입,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3개월→3주)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인식	• 오프라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 부족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및 중대범죄라는 인식 형성

출처 : 정부 관계부처 (2020.4.23.).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보도자료, 9쪽.

나. 불법 음란물 생산·유통 방지를 위한 차단 및 삭제 지원 관련 정책

불법 음란물 삭제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7월 22일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하여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2019.7.23.). 기존에는 삭제지원 인력이 직접 피해 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거나 개별 사이트를 일일이 검색해야 했으나 해당 삭제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 촬영물에서 AI가 이미지를 추출하고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이미지, 유사도, URL, 제목, 게시자 ID, 검색 키워드, 일시 등)를 검토하여 피해 촬영물 유포 사례 확인 시 해당 웹하드에 삭제 요청을 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2월 11일 불법 음란물과 불법 도박과 같은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http) 및 우회접속을 통해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9.2.12.).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경우에는 사이트 접속의 기술적 차단이 불가능하여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등 7개 ISP는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식을 도입하였다. SNI 적용 시 불법 인터넷 사이트의 화면은 별도 경고 문구가 제공되지 않은 채 암전(black out) 상태로만 표시된다.

정부는 그 전에도 웹하드, 필터링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음란물이 끊임없이 유통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2019년 1월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이하 ‘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정부 관계부처, 2019.1.24.).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장의 업체 간에 기 형성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이 유통됨에 따라 기존에 마련된 대책으로는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불법 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지대책은 (i) 불법 음란

물 생산·유통 차단(모니터링 대상 확대, 신속 삭제·차단) 및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구속수사 및 징역형 처벌), (ii) 공공 필터링 도입이나 불법 음란물 차단DB 등 불법 음란물 차단기술 개발, (iii)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 피해자 지원 확대,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3장 디지털성범죄물 규제 관련 이슈별 검토

제1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관련 이슈

본 장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부과된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주요 내용은 (i)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사후적 유통방지 조치, (ii)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적 기술적·관리적 조치, (iii) 그 밖에 기술적 조치 무력화 금지 및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기록 의무로 구분되며, 이하에서는 각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하위법령 개정 과정의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사후적 유통방지 조치

가. 불법촬영물등의 의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인 불법촬영물등의 범위를 (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i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제한하였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구별된다.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유통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불법정보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유통방지 조치 대상이 되는 3가지 유형의 불법촬영물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음란정보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서 불법촬영물등의 범위를 이와 같이 제한한 것은 법률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N번방 사건에서 불법촬영을 통한 성착취물의 유통이 주요 문제로 대두된 점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서는 기존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달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규제가 부과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과중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후적 유통방지 조치 의무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된 (i)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신고 간주사업자 포함) 및 ii)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웹하드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무는 불법촬영물등이 실제로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서 사후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해당한다. 사후적 유통방지 조치의무는 신고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라면 예외없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래에서 살펴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부담 주체와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 가능 기관·단체의 유형을 정하고, 신고 또는 삭제요청의 서식,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 하위법령 개정 시 고려 사항

1) 신고·삭제요청 가능 기관·단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서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정 신고·삭제요청의 주체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단체도 조치의무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정을 신고·삭제요청 할 수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에서는 신고·삭제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한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정 신고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불법촬영물등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통 사정 신고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수단에 실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다수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정을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불법촬영물등 차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신고·삭제요청 가능 기관·단체를 규정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파악하고 해당 기관·단체의 중요성 및 신뢰도에 비추어 시행령에 명시하게 될 신고·삭제요청 가능 기관·단체를 확정하였으며, 각 지역별 피해 구제 기관·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2) 신고·삭제요청 서식

모든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및 웹하드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정을 인지한 경우 그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고·삭제요청 등의 형식 및 절차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 사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를 위한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의 양식의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서식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별지 서식으로 규정하고, 해당 별지 서식 또는 그 서식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신고·삭제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에서는 신고·삭제 요청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URL 또는 화면 캡처본을 첨부하도록 하며, 단순 유통 신고만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요청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요청 내역을 선택하고 신고·요청 사유로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형을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를 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유통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서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정형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요청서의 기재만으로는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규제에 의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고·요청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등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 불법촬영물등에 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4)에 따라 설치된

4)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를 개시하고 그에 따른 심의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5),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아동·청소년 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6)에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적 기술적·관리적 조치

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5) 제10조(심의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이용자 등이 위원회에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신고한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6)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불법촬영물등이 애초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라는 점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정을 인지하는 경우 이를 삭제·차단 등의 방법으로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과는 구별되는 조치 의무이다. 이러한 사전적 조치는 사후적인 조치와 비교하여 조치의무사업자들에 대하여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입안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 하위법령 개정 시 고려 사항

1) 사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체 매출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일일평균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되, 불법촬영물 등이 쉽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례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9조7)에서는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말 기준 일일평균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⁸⁾에서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무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일일평균이용자 수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통신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매우 다양한 유형의 전기통신사업을 포괄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일정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만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이 매우 낮은 유형의 사업자 가령, 금융, 쇼핑, 중고거래, 웹툰, OTT 등의 서비스의 제공 사업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의 유형을 특정하고, 제외되는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로 규제 필요성이 큰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일반 이용자들이 정보의 게재나 공유가 불가

7)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8)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능하거나, 제한된 이용자들 사이에서만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로 (i)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을 제공하는 SNS 서비스, (ii)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1인 방송 서비스, (iii)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낮은 서비스로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서비스,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적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로는 (i)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신고·삭제요청 창구를 마련하는 조치, (ii) 이용자의 검색결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정보가 송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iii) 이용자가 게재하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터링하는 조치, (iv)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한 경고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 아동·청소년 정보호법 시행령 제3조9)에서는 온라인서비스

9)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로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¹⁰⁾에서는 웹하드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이용자가 불법음란정보를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이용자의 검색 및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 불법음란정보 유통 금지에 관한 경고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¹¹⁾에서도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

10)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11)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

하는 기술적 조치로 저작물등의 인식을 위한 기술적 조치,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 경고문구 발송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용자가 게재하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터링하는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자들의 경우 위 의무 이행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적 조치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되, 이러한 기술의 호환이나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다만 일정한 유효기간 내의 성능평가를 통과하도록 설계함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실무상 개별 사업자들이 필터링 기술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교·식별의 대상이 되는 방송통신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별 사업자들에 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데이터베이스에 편입된 정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변경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개별 사업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고시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두고 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고시에서는 개별 조치들의 구체적인 이행기준을 규정하고 특히 필터링 조치와 관련하여 성능평가 시행기관 및 기준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성능평가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 기준인 TTA의 성능평가 표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3. 기술적 조치 무력화 금지 및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기록 의무

가. 기술적 조치 무력화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 (i)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ii)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

나.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기록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4항에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위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기록 의무 기간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¹²⁾에서는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 기록 의무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기술적 조치는

12)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웹하드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보다 다양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적 조치라는 점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보다 장기간의 기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 2 절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이슈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과징금 부과 수준에 대한 검토

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

디지털성범죄물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며,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불법촬영물 유통 발생 억제 및 불법촬영물 유통자에 대한 응징의 필요성을 고려 시 그 도입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¹³⁾,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2항 등 타 법령¹⁴⁾은 고의 및 고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와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만 적

13)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p.6, 2017. 9.

14)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제3항,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행위로 손해발생시 해당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고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특허법 제128조제8항 등

용할 경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징벌적 손해가 가능하다고 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촬영물 등의 불법정보 삭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의 체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의 균형 및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전가책임 논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규제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제재로 인하여 불법촬영물이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특별한 검토 없이 바로 삭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표현의 자유 축소,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등의 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 과징금 부과 수준의 결정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은 과징금 부과 시 관련 매출액의 3%를 적용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안¹⁵⁾이 발의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다.

그러나 관련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과징금의 수위가 매우 과도하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위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역시 기존 정보통신망법¹⁶⁾에 따른 과징금의 비율이 100분의

15)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9.11.15.)

16)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3 이하의 수준이었던 과징금 부과대상 불법행위는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인 의무 위반에 비하여 행위의 불법성이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정보 관련 조치 미이행에 대한 10%의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¹⁷⁾.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이 되는 과징금을 부과한 타법 사례로는 공정거래법 제 22조¹⁸⁾가 있으며 과징금 부과 기준 비율이 10% 이상인 타법 사례로는 보험업법 제

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4조(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4. 제24조의2(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경우
 - 5의2. 제25조제4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8. 제63조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17)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9.11.15.) 검토보고서, p.6, 2020. 3.
- 18)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96조제1항¹⁹⁾,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²⁰⁾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을 때 다수의 사업자 간 의도적인 공동행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관련 매출액이 아닌 특정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사례들로, 실제 불법촬영물 유포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 방지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매출액의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에 합당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수준은 일반적인 전기통신사업법의 수준과 동일하게 관련 매출액의 3%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9)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2.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3. 제99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이하 생략)

20)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

2.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가.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미이행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 설정 시 중요한 부분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서비스의 특성상 하나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메일, 카페, 블로그, 뉴스, 클라우드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아무런 범위 설정 없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액이라고 할 경우 불법촬영물 유통과 전혀 상관없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액까지 관련매출액이 될 수 있는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만을 구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법촬영물이 유통되었다고 해서 해당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이라고 상정하여서는 안되고, 불법촬영물이 직접적으로 유통된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매출액만을 기준액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시행령 개정 시 (i) 매출액의 범위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라고 바로 규정하는 방법과 (ii)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소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두되,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7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라고 규정하면서 시행령 별표6에 기준금액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범위가 다양하고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7조의 과징금 산정방법에서는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와 관련된 과징금에서도 위와 같은 곤란 사유를 차용하되,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게 되는 상황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역시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1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

가. 과징금 부과 시 고려 사유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의 기본적인 틀은 과징금은 부가통신사업자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고려사유는 타법 사례에서도 참고하여 볼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과징금 부과 시 고려 사유를 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들고 있다.

한편 가중·감경 시 고려사유로 고의·과실 여부를 포함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 과징금 부과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의·과실 여부를 과징금 참작 사유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고의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중과실의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과징금 가중·감경 시 고의와 중과실(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의 위법성의 정도를 참작할 수 있는 재량, 즉 (중)과실의 경우 고의보다 감경한다는 등의 재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고의·과실 여부를 참작사유로 포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기준금액의 산정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인한 피해규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50조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서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1> 제50조 금지행위 위반의 중대성 판단 기준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그런데 위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존 선례를 참고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위반에 적용한다고 할 때, 표 안의 요건들이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불 명확하여 위반행위 등의 수범자가 해당 내용을 보고 자신의 위반행위가 어떠한 수준의 위반행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유사입법례를 차용하는 것보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위반에 적합한 중대성 판단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세부평가기준표상의 각 항목들을 위반행위 내용별로 분류하고, 위반행위 내용마다 고려 비중을 정하며, 각 위반행위 내용의 정도별로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여 해당 점수를 합산한 총합이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일정 구간에 속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 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다른 과징금 부과 세 부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불법촬영물 유통 등 방지의 무의 경우에도 차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6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8-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5호) 등에 규정된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제3절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관련 이슈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차단이 가장 급선무라는 인식 하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불법촬영물의 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0. 6. 9.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²¹⁾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이하 “유통방지 책임자”)에 관한

21) 제44조의9(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 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

규정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지정된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3항은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별도의 교육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는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를 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구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와 자격요건,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책임자 지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책임자 직책

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실적인 정책 집행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²²⁾

이에 정보통신사업법 제44조의9는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설정은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제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제도에 관하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상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참고가 될 만한 유사 법제로는 정보통신망법 내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²³⁾)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제도(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²⁴⁾)

-
- 2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p6, 2019. 3.
- 23)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마련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제도(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²⁵)가 있다.

-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유사 법제에 따른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이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중 (i)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또는 (ii)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구체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제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일반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무를 부과하였다. 대신, 단서 규정을 두어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무를 면제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에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무 면제대상을 (i)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즉 자본금이 1억 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 (ii)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ii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미만이고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자로 구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우 추가적인 범위 제한

-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지정의무 면제 없이 개인정보처리자 일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른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범위 설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제도를 신설한 2020. 6. 9.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 일련의 법 개정 시도 중 하나였다.

<표 3-2> N번방 사건 관련 주요 법률 개정 현황

관련법	주요 개정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용어변경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운반·광고 등 법정형 상향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을 도모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제7조의2 신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 처벌근거 마련(제11조제5항) - 상습적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한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제11조제7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500만 원→2천만 원 상향 - 카메라 등 촬영·복제 및 반포 등/ 5년→7년, 3천만 원→5천만 원 처벌상향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조항, 상습범죄시 가중처벌 적용(제14조제4항 및 제5항)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시 처벌(제14조의3)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처벌을 명확히 규정(제14조제1항내지 제3항)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제15조의 2 신설)

<p>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1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 - 불법촬영물의 등의 삭제·접속차단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제22조의6 신설)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정보 중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제44조의9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4 신설)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4조의5 및 제76조제3항제25호 신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2020).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61호, 3-4쪽.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경로로 악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여러 법률에서 각기 다른 내용의 규제가 신설되는 만큼 규제 간 통일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수범자들이 상당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미 타법상 특정 규제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신설로 수범자의 혼란이 가중되거나 동일 사안을 규율하는 법제 간 충돌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에서 위임한 내용을 벗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앞서 검토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무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정의무 부과 범위가 과도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2.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와 자격요건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와 자격요건은 유통방지 책임자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에게 부여된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유통방지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대한 책임을 총괄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가 서비스의 종류와 규모, 불법촬영물등 유통 용이성 등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의 직급, 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유통방지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와 별도로 개인 단위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반드시 복수 또는 다수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문제 발생 시 특정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다른 유통방지 책임자의 책임까지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이는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에 대해서는 상한 내지 하한과 같은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유통방지 책임자는 궁극적으로 서비스 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문제 발생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자이므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의 임원이거나 최소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보호 책임자 역시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청소년 보

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제1항),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도 임원급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라는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제1항).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2)에서도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사업주 내지 대표자 또는 임원(다만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정한다는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3.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3항에서는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주체, 내용, 방법, 횟수, 시간 등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우선, 교육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제도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괄하여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제작, 운영 등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은 유통방지 책임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상당할

26)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것이다. 가령, 앞서 살펴본 N번방 사건의 후속 입법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이 다수인만큼,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련 제도 및 법령에 특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정보통신망법에서 부여한 조치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육 및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대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대한 교육도 유통방지 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교육 시간과 방법의 경우 수범자인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실효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교육 시간의 경우 어디까지나 유통방지 책임자 입장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 교육 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방법의 경우 유통방지 책임자가 교육일에 불가피한 업무상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유통방지 책임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타 직원이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리 교육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법에서 구태여 유통방지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허용되기 어렵다.

다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경로가 비단 국내 사업자의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계기가 된 ‘N번방 사건’은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을 통해 발생한 만큼, 해외 사업자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허용함으로써 장소적 제약이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이수 거부의 사유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2020. 6. 9.자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 12. 10.로 시행 예정인 가운데,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통상의 예와 같이 매년

일정 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규정할 경우 수범자인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는 20일 이내에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유통방지 책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다면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그 시행을 2021. 1. 1.로 유예하는 것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절 투명성 보고서 제출 관련 이슈

투명성 보고서는 기업이 정부의 이용자 정보 제공요청, 콘텐츠 삭제요청 등에 따른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기업 보고서의 한 형식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특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요청한 이용자 관련 정보의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어떤 내용의 이용자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었는지를 알리는 수단이다.

2020. 6. 9.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²⁷⁾에서는 정

-
- 27)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보고서의 명칭을 투명성 보고서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규정에서 투명성 보고서의 내용도 (i)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ii)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iii)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iv)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v)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범위 설정의 기준이 문제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부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설정 기준을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제도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과 동일하다.

한편, 투명성 보고서의 내용의 상당수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신고, 삭제요청 등의 검토 및 처리 결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조치의무사업자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사업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투명성 보고서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의무 사업자의 범위는 관련 규범의 통일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5에 따른 조치의무 사업자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른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디지털성범죄물 규제 관련 이슈별 개선방안

제 1 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관련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

본 연구는 앞선 논의를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및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아래 <표 4-1>과 같이 마련하였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자와 관련하여 (i)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ii)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로 (ii-a)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i-b)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표 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안)_사전조치의무사업자 관련

-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식별해야 한다.
 -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

- 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⑥ 법 제2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또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3의2]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와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아래 <표 4-2>와 <표 4-3>과 같이 작성하였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 공유하거나 정보 검색 결과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였다.

<표 4-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3의2](안)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관련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 (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서 제외한다.

1.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음악, 방

- 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서비스의 제공(판매를 포함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 다음 각 목의 법률을 제외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민법」
나. 「상법」

<표 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삭제 요청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성명(기관·단체명)*</td> <td style="width: 50%;">생년월일(기관·법인번호)</td> </tr> <tr> <td>전화번호(휴대폰)*</td> <td>전자우편 주소*</td> </tr> </table>	성명(기관·단체명)*	생년월일(기관·법인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성명(기관·단체명)*	생년월일(기관·법인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현황*	※ 불법촬영물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URL과 화면 캡처본을 첨부하여 주시되, URL 기재가 어려울 경우 검색어 등 해당 불법촬영물등의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내역	<input type="checkbox"/> 유통 신고 <input type="checkbox"/>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가능).				
신고·삭제 요청 사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불법촬영물 </td> <td> <input type="checkbox"/>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td> <td> <input type="checkbox"/>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불법촬영물	<input type="checkbox"/>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input type="checkbox"/>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input type="checkbox"/> 불법촬영물	<input type="checkbox"/>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input type="checkbox"/>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바랍니다. (중복가능)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허위영상물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성적행위"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제공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삭제요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삭제요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 명)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	3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신고 · 삭제요청인(대표자)
성 명
(기관 · 단체명)
(서명 또는
인)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제1항 및 [별표3의2]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는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았다. 다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전문가 A)나 로그인을 기반으로 하는 반 폐쇄적인 새로운 유형의 웹서비스(전문가 B)를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행 이후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나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부여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의 실효성 확보 방안의 경우, 과징금 처분 등 사업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i) 공공 DB 구축을 통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 제공, (ii) 필터링 성능 평가 기관 지정, (iii) 조치의무사

업자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iv) 투명성 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의 업무 계획들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전문가 A), 아래와 같이 이행점검의 기준 및 절차 마련과 사업자 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전문가 B)도 제기되었다²⁸⁾.

- 조치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정례 및 수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의 실행을 위한 구체화된 안내가이드 및 업무매뉴얼 등 마련·배포
- 조치시행 2년차부터 새로운 조치의무 부과에 따른 사업자 업무 증가 및 애로 사항 관련 정례 조사
- 제30조의6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범위 구체화 및 지원 위한 예산 확보

2. 관련 고시(안)

다음으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해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과 관련하여 아래 <표 4-4>와 같이 고시(안)을 마련하였다.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조치와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게재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28) 본 연구에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등의 타당성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학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의견을 구하였으며,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A(대학 소속 교수, 언론학 박사), 전문가B(연구소 소속 센터장, 커뮤니케이션학 박사)로부터 구한 의견을 작성하였음

<표 4-4>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안)_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치의무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필터링기술”이란 특정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하여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을 말한다.
3. “표준 DNA DB 기술”이란 영상의 고유한 특징값(DNA)을 추출하여 다른 영상과 비교·분석을 통해 동일한 DNA값을 가진 영상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필터링기술 중 특징기반 필터링(DNA)의 기술수준을 정량화하여 객관적인 성능 지표를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조치) ① 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경우 전화·메일 등을 통하여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앱 최초 실행 화면 등에 신고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아이콘, 배너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① 조치의무사업자는 정보의 명칭 등 제목 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의 정보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검색 결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금치어로 설정하고 이용자의 금치어의 검색을 제한하는 조치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청소년유해어로 설정하고 성인인증을 받지 않은 이용자의 청소년유해어 검색을 제한하는 조치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제5조(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① 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터링 기술

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필터링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해쉬데이터, 특징기반 DNA 데이터가 포함된 필터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필터링 기술 적용 결과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DNA DB 기술을 적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를 적용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조치의무사업자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의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을 분리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를 적용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검색엔진 등과 같이 서버에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영상·화상·음성 등의 정보가 저장되지 않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를 적용할 대상 정보가 없는 경우

제6조(사전 경고 조치) 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 메일, 문자,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능평가) ① 성능평가 시행기관은 000으로 한다.

②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항목과 통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0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능평가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내 용	단 위
강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변형콘텐츠의 특징정보가 원본콘텐츠의 특징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도 - 방법 : 원본/변형 콘텐츠에서 각각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인식을 측정 - 결과 : 인식, 오인식, 불인식에 대한 백분율 	%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반복적으로 수행된 특징정보 추출 및 인식에 대한 일관성 유지 정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 추출의 일관성 : 원본 콘텐츠의 특징정보를 반복 추출하여 추출된 특징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인식의 일관성 : 추출된 특징정보에 대한 인식의 질의를 반복 수행하여 인식의 결과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결과 : 특징정보의 일관성률 및 인식, 오인식, 불인식에 대한 일관성률 	
시스템 사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특징정보 추출 및 인식 결과 회신 등에 사용한 시스템 자원 사용률 - 방법 : 특징정보 추출 및 인식 결과 회신 등 시간변화에 따른 테스트 PC의 CPU 및 메모리 사용률 측정 - 결과 : 특징정보 추출 및 인식 결과 회신 등에 사용한 CPU 및 메모리 사용률 	%
특징 정보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원본콘텐츠 특징정보의 크기 - 방법 : 원본콘텐츠 특징정보 크기 측정 - 결과 : 콘텐츠의 재생 단위시간당 특징정보의 크기 	KB/S
고속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원본콘텐츠 특징정보를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방법 : 원본 콘텐츠로부터 특징정보를 추출하는 시간 측정 - 결과 : 콘텐츠의 재생 단위시간당 특징정보 추출시간 	S/M (분)
추출 및 검색· 비교 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변형(왜곡) 콘텐츠가 원본콘텐츠의 특징정보를 인식하는데 소요되는 변형콘텐츠 특징정보 추출 및 검색/비교 시간 - 방법 : 변형콘텐츠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원본콘텐츠 특징정보 DB에서 인식여부의 결과 값을 리턴 하는데 소요되는 추출 및 검색/비교 시간 - 결과 : 인식에 소요되는 평균 추출 및 검색·비교 속도 	S/건
부분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콘텐츠 중간부분의 특징정보에 대한 인식 정도(믹스된 콘텐츠의 인식 정도) - 방법 : 믹스된 콘텐츠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하고 원본 콘텐츠 특징정보 DB에서 인식을 측정 - 결과 : 개별 인식, 오인식, 불인식 및 전체 인식에 대한 백분율 	%
인식 정보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특징정보 인식을 위해 필요한 콘텐츠의 최소 크기 - 방법 : 클립 단위로 자른 변형콘텐츠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원본 콘텐츠 특징정보와의 인식을 측정 - 결과 : 클립 단위 변형콘텐츠 각각에 대한 인식에 대한 백분율 	%

제2 절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어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를 아래 <표 4-5>, <표 4-6>과 같이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위반의 중대성 위반행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주요 이슈,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7(안) 과징금 관련

<p>제30조의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조치의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요청받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p> <p>② 법 제22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2. 불법촬영물등 유통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제1항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치의무 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3의3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조치의무 사업자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⑥ 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표 4-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3의3](안)_과징금 관련

조치의무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조치의무 사업자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 산정

1) 기준금액은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30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보통 위반행위	5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인한 피해규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 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 감경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 안에 대해 전문가 B는 타 위반행위와 비교했을 때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은 적정하다고 판단²⁹⁾하였으나, 전문가 A는 과징금 산정비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마치 단순 서비스 제공자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하는 범죄자와 동일선상에서 다루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다. N번방 이슈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분노는 디지털성범죄물을 유통하기 위해 채팅 공간을 만들고 실제 운용했던 범죄자와 이를 이용했던 이용범죄자에 대한 것이었지 관련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하기 만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위반 행위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가담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처벌에 대한 당위성이 존재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본 사안에 적용해볼 경우 행위의 고의성 등의 차원에서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전문가 A의 의견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방통위 지침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자동생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과징금의 상당 부

29) 다만, 조치의무대상사업자의 서비스별 회계분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액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 실무적으로 매출액 산정을 위한 회계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분을 경감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대리인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안별로 규제를 만드는 것이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관련 고시(안)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7 및 [별표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관련 매출액 산정, 중대성 판단,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 등의 세부 기준을 아래 <표 4-7>과 같이 마련하였다.

<표 4-7>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안)_과징금 관련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안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p> <p>제3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영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또는 영 제30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2. 서비스 제공 방식 3.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 방식이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4.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5. 서비스 제공 상대방

6.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중대성의 판단) 영 [별표 3의3] 2. 가. 3)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은 다음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해당하는 점수에 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산정기준	중대성의 정도	과징금의 산정비율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기준금액 (관련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2.4이상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9억원
1.6이상 2.4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7억원
1.0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천분의 15	5억원

고려사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비중				
위반 행위 내용	불법촬영물등의 내용	0.2	•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로서 성적으로 중요한 부위가 노출된 경우	• 중요부위가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식별이 가능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경우	• 상·중 이외 기타 사항인 경우
	신속한 조치 정도	0.2	• 불법촬영물등 삭제 요청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불법촬영물등 삭제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불법촬영물등 삭제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발생 정도	0.2	•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규모	0.1	• 불법촬영물등이 3 개 이상의 조치의무 사업자의 서비스에 유통된 경우	• 불법촬영물등이 2 개의 조치의무사업 자의 서비스에 유통 된 경우	• 불법촬영물등이 동일한 조치의무사 업자의 서비스에 한 정되어 유통된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기간	0.1	•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1년 이상 지속 된 경우	•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1개월 초과 1년 미만 지속된 경우	•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1개월 이내에 끝난 경우
	피해의 정도	0.1	•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 재산상 상당한 피해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 재산상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정 도가 미미한 경우
	피해 회복의 정도	0.1	• 이용자의 피해회 복이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	• 이용자의 피해회 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 이용자 피해의 실 질적 회복이 이루어 진 경우

제5조(필수적 가중·감경) ①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최초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2회 이상의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1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을 유지한다.
- ② 제2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6조(추가적 가중·감경) 영 [별표 3의3] 2. 다.에 따라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제7조 관련)

I. 가중사유 및 비율

1. 조치의무사업자 및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자

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제1호 부터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II. 감경 사유 및 비율

1. 조치의무사업자가 영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한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30 부터 50 이내
4.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5.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6. 기타 제1호 부터 제5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제 3 절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관련

개별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마련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래 <표 4-8>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2(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규정 에 따르면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1명 이상의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표 4-8>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2(안)_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관련

제35조의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 무자"라 한다)는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 임원
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교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받아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 4-9>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1의2](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관련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35조의2제1항제2호 관련)
<p>“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p>비고: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음악, 방송 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서비스의 제공(판매를 포함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3. 다음 각 목의 법률을 제외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민법」 나. 「상법」

한편,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에 국한하여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본 조항에 대해 불법유해정보 유형별로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전문가 A)이 제기되었다. 현실적으로 제도의 운영상 정보통신망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60여 개의 사업자 대부분 관련 업무를 기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별 불법유해정보 유형별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법 조항을 통합(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제44조의7 등)할 필요³⁰⁾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개별 사업자별로 이용자 보호 의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유해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관련 법령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 사업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할 교육 과정 역시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A는 2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 내용이 기존 성폭력예방교육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을지, 교육의 효과가 기대한 만큼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다만 본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35조의2제2항에 명시된 유통책임자 1명 이상 지정 건과 관련하여 이용자 규모 등에 따라 차등이 있는 권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전문가 B)도 있었다. 또한 책임자 지정의 유사 제도들의 사례를 봤을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횟수나 방법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관련 교육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이 필요한 대상의 규모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다.

제 4 절 투명성 보고서 제출 관련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를 특정하는 조항을 아래 <표 4-10>과 같이 작성하였다. 투명성 보

30)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는 분리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함

고서 제출의무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와 동일하다.

<표 4-10>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안)_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관련하여 전문가 A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취지라면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익추구 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8년 영국의 “Online harms white paper”를 보면 규제 대상은 파일공유사이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메시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기업, 온라인 포럼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 시민단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정보공시 등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전문가 A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0.9.6.).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출범 1년, 상시 심의로 24시간이내 처리 및 시정요구 큰 폭 증가.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12).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여성가족부 (2018).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 및 제재 강화방안 연구.
- 이수연·이혜림·김수아·김하얀 (2014).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승희 (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59-95.
- 심영희 (2001). 사이버 성폭력, 어디까지 왔나?. 사이버 성폭력 세미나, 한국여성단체연합 세미나 자료집, 3-34.
- 윤덕경·전혜상·천재영·강지명 (2019.1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URL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_sld=148853543
-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한국사이버 성폭력 (2017).
- 전윤정 (2020.3).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69호, 1-4.
- 전윤정 (2020.9).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61호, 1-14.
- 이선희 (2018). 사이버 성폭력과 여성분노의 조직화. 젠더리뷰, 가을호, 41-51.
- 대검찰청. 매 연도별 범죄분석 결과.

● 저 자 소 개 ●

이 종 관

-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 성균관대 경제학과 석사
- The 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경제학과(공공정책) 박사
- 현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 지 은

-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중앙대 언론학과 석사
- 중앙대 언론학과 박사
- 현 법무법인 세종 선임연구원

정 동 주

- 서울대 영어영문학 졸업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 창 준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강 지 현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 현 영

- 서울대 사회교육학 졸업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CC-2020-28

인터넷상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20년 12월 31일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